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해양관할정책 및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윤영민⁺, 이윤철⁺⁺

A Study on the Maritime Jurisdiction Policy an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stat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Young-Min Youn⁺, Yun-Cheol Lee⁺⁺

Abstract : There are several Disputes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and the policy of maritime jurisdiction of the states around the Korea Peninsula. These disputes are connected with the place of 'Tokdo' dominated practically by Korea, 'Senkaku islands' dominated practically by Japan, and 'Kurile islands' that is under disputing between Russia and Japan. North Korea has also the problem.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among these States would be concluded in very near future.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maritime jurisdiction policy of these states. South Korea also has to set the policy.

Key words : Continental shelf, Exclusive economic zone(EEZ),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aritime jurisdiction policy, Territorial sea.

1. 서론

한반도 주변의 해역은 각국의 관할권 주장이 대립하여 항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일본이 위협적인 탐사선 파견으로 동해에서의 충돌 발생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러한 충돌은 차후에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열기로 하고 일단락이 되었다. 이 시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해양관할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더불어, 최근 자원 확보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까지 고찰해 보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한반도 주변해역에 적용하여 공정한 경계획정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문제를 고찰하여 우리의 땅인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경계획정

2.1 EEZ의 경계획정

EEZ의 폭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 이르는 광대한 수역이다. 그러므로 상호 인접한 경우에는 200해리를 모두 획정할 수 없을 만큼 근접하여 수역의 범위가 상호 중첩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때 황으로 근접한 국가를 인접국이라고 하고, 마주보는 국가를 대항국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 상호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인접국 및 대항국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EEZ의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제74조 제1항에 '서로 대항하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EEZ의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2.2 대륙붕의 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제76조에서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연결된 대륙붕변계의 외연까지의 해저, 해상과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고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범위는 최소한도 200해리이며, 대륙변계가 연장될 경우에는 350해리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련된 국가간의 분쟁은 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해결이 곤란하다.

3. 각국의 해양관할정책

3.1 일본의 해양관할정책

일본은 동해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국과 대립중이며,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4개섬, 중국과는 조어도에서 영유권 대립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각각의 도서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땅은 내 땅, 네 땅도 내 땅" 이라는 이중 잣대를 기준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남의 영토는 실질적 지배를 단단히 하고, 남이 갖고 있는 자기네와 연관된 영토는 계속 권원을 주장하여 흡집을 내자는 것이다.

3.2 중국의 해양관할정책

중국의 해양관할정책에서 중요시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해양의 영유권을 확보하여 전략적인 기지로 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E-mail: 1977yym@hanmail.net, Tel: 051)410-4193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법학박사, E-mail: lyc@mail.hhu.ac.kr, Tel: 051)410-4249

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양국가로의 출발점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해양자원과 해로확보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중국의 해양관할정책을 살펴보면 첫째는 해양영토분쟁과 경제협력관계의 분리이고, 둘째는 논쟁유보, 공동개발이다. 중국은 일본과의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과의 해양경제획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실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3.3 러시아의 해양관할정책

2004년 5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연례연두교서에서 일본을 미국, 중국, 인도와 함께 “주요파트너”로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일본과 “정치와 경제대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3일 회견에서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소련이 남쿠릴 4도중 2도를 일본에 반환한다고 약속한 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러시아는 양국관계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걸림돌인 영토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3.4 북한의 해양관할정책

북한은 1955년에 12해리 영해를 선포했으며 1977년에는 200해리 경제수역과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관할권 설정과 관련된 법령들을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남북간에 해상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먼저 이러한 북한 관할권의 정확한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4. 독도문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영토다. 1905년 ‘무주지 선점’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1900년의 고종이 고대 이후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선언한 ‘칙령41호’의 ‘울도군 석도’ 조항으로 불법 조처임이 증명된다. 52년 신생 독립국인 한국이 ‘평화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국이 한국 영토를 인정한 증거이고, 65년 한-일 협정의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처리하지 않은 것 역시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증거다. 이렇게 볼 때 2차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누락된 것을 악용하여,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를 다시 영토 확장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금 당장 결정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국제법상 독도의 영토주권이 결정되면 수역은 자연히 결정되는 법이다.

5. 결론

오늘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지구상의 마지막 자원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종래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는 달리 그 기능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당해 연안국은 수중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는 물론이지만 그 해역에서의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풍력·조력발전 등 수역의 경제적 이용권,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설치·사용권, 해양환경의 보호·보존권, 해양과학조사권 등을 갖게 됨으로써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경제획정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해양경제획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모든 연안국이 가입한 다자조약이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이라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관련국 모두가 새로운 해양법체제에서 모두 해양경제획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출판사, 2002.
- [2] 박용현, “동북아시아의 해양경제획정 문제”,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제2호, 1996.
- [3] 김선표, 홍성걸, 이형기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보고서, 제1권, 제18호, 2000.
- [4] 최낙정,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획정원칙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1999.
- [5] 장복희, “한국 주변해역의 경제수역의 경제획정”, 연세법학연구 제2권 제1호, 1992.
- [6] 이상면, “경제수역선포에 따른 한일간의 해양관할권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2호, 1997.
- [7] 백진현, “남북한 해운협력과 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제1호, 1994.
- [8] 최태강, “김권 2기 푸틴정부의 러-일간 영토문제”, 슬라브학보 제21권 제2호, 2005.
- [9] 이정태, “중일 해양영토분쟁과 중국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제2호, 2005.
- [10] 김진기,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005.